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 계 · 주의 요구

제 목 공공기관 표준 업무 시스템 구축 사업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징 계 대 상 자 충청남도 ○○○○○과 지방○○○○○ ○○○
(전 ○○○○관)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청남도 ○○○○관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7. 21.부터 2017. 7. 1.까지, 지방○○○○○
○○○은 2015. 7. 2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실에서 “공공기관 표준업
무 시스템 구축 사업” 업무관련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의료원 등 20개 공공기관의 문서·재정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기 위해 기관별로 개별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표준화하기 위하
여 (주)○○○ 컨소시엄과 2016. 12. 28. 최종 사업 완료하기로 하여 2016. 6. 1.계
약(사업비 : 648,400천원)을 체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공공기관 표준 업무 시
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주요 과업 내용

구분	ERP 도입 구축	그룹웨어 도입 구축	정보공개
주요내용	○예산, 회계 등 재정업무 전반 및 인사·급여 관리의 ERP 도입 구축 ○표준화 업무분석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및 추가 개발 ○지출결의, 복무관리 등 주요업무의 ERP-그룹웨어간 연동 처리	○공공기관 그룹웨어의 안정적 운영관리 ○표준 ERP와의 안정적 연동을 위한 통합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표준업무시스템을 통한 문서·재정정보를 충남넷과 기관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

1. 사업 범위 축소 및 과업 일부 미이행 상태로 검수 업무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은 “공공기관 표준 업무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적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공공기관 표준 업무 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에 ○○○○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업무시스템(업무처리시스템, 회계처리시스템, 지출 등 정보공개)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으나 ○○○○공사, ○○○○원, ○○○○○○재단, ○○○○○○○○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시스템(업무처리시스템, 회계처리시스템, 지출 등 정보공개)를 전체 구축하지 않았으며 ○○의료원, ○○의료원, ○○의료원, ○○의료원 등 4개 의료원에 대하여는 전체 업무시스템 중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과업 등 형상 변경 없이 검수한 사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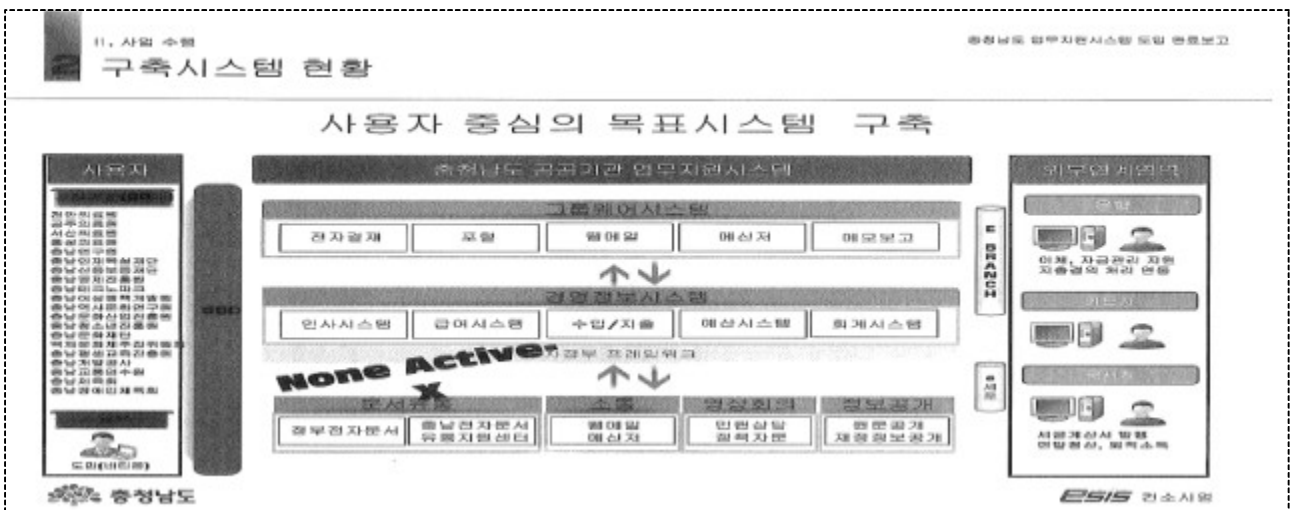
[표2] 주요 과업 내용

기관명		구축 운영 여부	업무처리시스템			회계처리시스템		지출정보공개	
			시스템명	기능	문서유통 (도·농·각기관)	시스템명	기능	여부	방법
1	○○○○공사	전 체 미 구 축	전자결재 시스템	결재, 게시, 메일	수·발신	더존	회계전표 입출력, 결산	공개	클린아이, 홈페이지
2	○○의료원	회 계 미 구 축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K-hopes	예산·지출 결의,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3	○○의료원	회 계 미 구 축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K-hopes	예산·지출 결의,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4	○○의료원	회 계 미 구 축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K-hopes	예산·지출 결의,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5	○○의료원	회 계 미 구 축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K-hopes	예산·지출 결의,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6	○○○○원	전 체 미 구 축	연구원 통합포털 시스템	결재, 복무관리	수·발신	더존G20	인사, 회계, 자산관리	미공개	-
7	○○○○○○재단	구 축 운 영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업무지원 시스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8	○○○○○○재단	전 체 미 구 축	그룹웨어	문서결재, 접수, 발송	수·발신	차세대통합 정보시스템	신용보증·평가, 채권관리 등	"	홈페이지 경영공시
9	○○○○○○원	구 축 운 영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업무지원 시스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결산	"	문서·재정 정보 공개
10	○○○○○○○○	전 체 미 구 축	핸디 그룹웨어	공문서 관리	수·발신	ERP One	회계, 인사, 급여 관리	"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11	○○○○○○○○원	구 축 운 영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업무지원 시스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12	○○○○○○○○원	구 축 운 영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업무지원 시스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기관명		구축 운영 여부	업무처리시스템			회계처리시스템		지출정보공개	
			시스템명	기능	문서유통 (도·구·각기관)	시스템명	기능	여부	방법
13	○○○○○○○○원	구축 운영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업무지원 시스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14	○○○○○○○○원	구축 운영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업무지원 시스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15	○○○○○재단	구축 운영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업무지원 시스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16	시○○○○○○○○위원회	구축 운영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업무지원 시스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17	○○○○○○○○원	구축 운영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업무지원 시스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18	○○○○○○○원	구축 운영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업무지원 시스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19	○○○○○회	구축 운영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업무지원 시스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20	○○○○○○○회	구축 운영	업무지원 시스템	포털, 결재 게시판 등	수·발신	업무지원 시스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결산	공개	문서·재정 정보 공개

위 관서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에 각 기관별 일괄 도입이 아니라 특성에 따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였고 제안요청서에서는 제안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별 시스템 세부 운영 현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수행자(제안사)인 ○○○(주)컨소시엄의 아래[그림1]과 같이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완료보고의 목표시스템 구축 현황”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는 물론 은행, 카드사, 국세청 연계 등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1]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현황



또한 위 관서의 ○○○○○○관-○○○○(2016.○○.○○.) “충청남도 공공기관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완료 보고” 문서에 도민들께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남넷 및 각 기관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사이트를 연계 완료하여 지자체 수준의 선제 공격 및 도민 접근성 향상되었고 아래 [그림2]○○○○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고 자체 보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2]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 개발 보고 문서

□ 실시간 정보공개(문서·재정정보)시스템 개발

① 원문(문서)공개 시스템

구분	내용
원문공개	- 기존 충남넷 사이트에 공공기관 정보공개 화면 추가 - 기관명과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 검색된 제목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가능 - 원문정보에 첨부된 파일 확인 가능

The image displays two screenshots of the '충남넷' (ChungnamNet) website, specifically the '공공기관 문서공개' (Public Institution Document Disclosure) section. The top screenshot shows the search interface with fields for '기관명' (Institution Name) and '기간' (Period), and a list of search results. The bottom screenshot shows the same interface with a red box highlighting the search results list.

“공공기관 표준 업무 시스템 구축사업” 실무담당자로(감독공무원) 지방○○○○○○○○과 실무책임자로(검사공무원) 근무한 지방○○○○○○○○○○은(주)○○○ 컨소시엄이 2016. 12. 26.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 FUN-EIR-002 거래처 등록시 은행과 연계하여 계좌검증 기능”, “FUN-EIR-009 수입결의 등록을 기반으로 미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처리 기능” 등이 아래 [표3]과 같이 완료되지 않고 준공 신고하였음에도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으로서 감독 및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계약해지, 지연배상금 부과 등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에 적어 충청남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용역에 대한 감독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다고 2016. 12. 27. 검수하여 충청남도 재무관에 제출하였다.

[표3] 요구사항 중 미이행 내역

요구사항 ID	요구사항내용	조치일자
FUN-EIR-002	○ 거래처 등록시 은행과 연계하여 계좌검증 기능	2017.7.24.
FUN-EIR-002	○ 수입결의 등록을 기반으로 미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처리	

그 결과 위 관서의 ○○○○○과에서는 실무담당자로(감독공무원) 지방○○○○○○○○과 실무책임자로(검사공무원) 근무한 지방○○○○○○○○○○이 작성한 준공 및 검수조서를 토대로 구축사업이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2016. 12. 29. ○○○(주)컨소시엄에 사업비 잔액 194,520,000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이 전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지급하여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다.

2. 시스템 구축시 암호화 미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의 인터넷망 사용자가 충청남도 국가통신망에 있는 “공공기관 표준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등을 조

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 관리하는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2016.12.9.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 강화 추진 계획에 수립하여 2016.12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공공기관 표준 업무 시스템” 구축사업 종료 후에 고유식별정보를 안전하게 전송·저장 등 관리할 수 있는 ○○서버(○-○○○)을 구축사업 완료후인 2017.8.31. 완료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 중 지방○○○○○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징계] 위 관련자 중 사업이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검수한 지○○○○○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 ○○○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